

니시노미야시 파트너십 · 패밀리십선서 증명제도

○니시노미야시 파트너십 · 패밀리십선서 증명제도

니시노미야시 파트너십 · 패밀리십선서 증명제도는 인생의 파트너로서 일상생활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일방 또는 쌍방이 성소수자인 두 사람, 또는 그 두 사람의 자녀/부모도 포함하여 니시노미야시가 파트너십 · 패밀리십 선서서 수령증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.

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니시노미야시 파트너십 · 패밀리십선서 증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파트너십 · 패밀리십선서 증명제도로 외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일은 없습니다.

(1) 선서를 할 수 있는 사람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- ①쌍방이 민법에서 정하는 성년에 달했다
- ②일방 또는 쌍방이 니시노미야시에 주소가 있거나 니시노미야시로 전입을 예정하고 있다
- ③쌍방에 배우자(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과 동일한 관계에 있는 자 포함)가 없다
- ④쌍방이 해당 파트너십선서와 관련한 상대 이외의 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
- ⑤쌍방이 민법(메이지 29 년 법률 제 89 호) 제 734 조 또는 제 735 조 규정에 따라 혼인이 불가능한 관계가 아니다

패밀리십선서의 경우 이하의 항목도 필요

- ⑥파트너십을 선서하는 사람의 자녀(양자 포함) 또는 부모(파트너의 부모 및 그 배우자)여야 한다
- ⑦타 지자체에서 다른 사람과 패밀리십선언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

(2) 구비서류

①파트너십 · 패밀리십 선서서 겸 확인서

②주민표 복사본(3 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)

니시노미야시 이외 지역에 거주 중인 분 : 니시노미야시로 전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전출증명서, 매매계약서, 임대차계약서 등)의 복사본

③독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일본인 : 호적전부사항증명서

외국인 : 혼인요건구비증명서(혼인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대사관, 영사관에서 발급합니다.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번역자를 명기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
④본인확인서류(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패밀리십선서의 경우 이하의 항목도 필요

⑤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
일본인: 호적전부사항증명서

외국인: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대사관, 영사관에서 발급합니다.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번역자를 명기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
(3) 선서를 하면

①시영주택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

②니시노미야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자격요건 등의 완화

(4) 선서를 하려면

선서를 희망하는 날짜의 7 일 전까지 니시노미야시 남녀공동참획추진과로 연락 0798-64-9495

(5) 주의

이 제도는 법적인 권리 ·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음